

## 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
제정 2002년 4월 29일 조례 제 712호  
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 
(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 
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 
정비에 관한 조례)  
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82호  
(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,  
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(이하 “증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. 15, 2022. 1. 13>

**제2조(비용)**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(철도, 선박, 항공 및 자동차)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*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오산시의회 의원
2. 오산시 소속공무원
3.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
4.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

**제4조(비용의 지급기준)**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5조(비용지급일수의 계산)**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,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

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
를 산정한다.

**제6조(비용지급의 제한)**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8. 1. 15 조례 제94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2. 1. 13 조례 제1982호,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  
조례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